

**2006 하합 30** 파산선고

채 무 자 신엘지프라이머리유동화전문유한회사  
위 사건에 관하여 본 파산관재인은 최후배당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이 공고내  
용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음

1. 재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총액 :

금25,790,388,329원

- 우선파산채권 : 없음
- 일반파산채권 : 금25,790,388,329원

2. 배당할 수 있는 금액 : 금5,981,329원

- 우선파산채권 : 없음
- 일반파산채권 : 금5,981,329원

2007년 1 월12일

채무자 신엘지프라이머리유동화전문유한회사의  
파산관재인 변호사 공 택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른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견해(Views)

제88차 회기

다음 진정 관련

진정번호 1321/2004 및 1322/2004 <sup>1)</sup>

진정인 : 윤여범, 최명진 (대리인 이석태 변호사)

피해자 : 진정인

당사국 : 대한민국

진정일 : 2004.10.18.(최초제출)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주:이하  
규약이라 함) 제28조에 의거해 설립된 시민적·  
정치적 권리위원회(Human Rights Committee)  
는 2006.11. 3. 회의에서 동 규약 선택의정서에  
따라 윤여범과 최명진을 위하여 제기된 개인진정  
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고 진정인과 당사국에 의  
해 제출된 모든 자료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견  
해를 채택한다.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의한 최종견해

1.1 진정(최초 제출일 2004.10.18.)을 제기한 윤  
여범과 최명진은 각각 1981. 5.27. 및 1980.  
5. 3.생인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들은 대한민  
국이 규약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자신들에  
게 피해를 주었다고 주장한다. 이석태 변호사  
가 대리인이다.

1.2 위원회 절차규정 제94조 제2항에 의거, 두  
진정은 상당한 사실적 및 법률상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병합 심리되었다.

진정인이 제기한 배경사실

윤여범 건

2.1 진정인 윤여범은 여호와의 증인이다. 당사국  
병무청은 2001. 2.11. 진정인에게 군대 입영  
통지를 했다. 진정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  
을 이유로, 정해진 입영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  
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sup>2)</sup>에 의거하여 체포,

1) 본 진정 심리에 참석한 위원 명단: Mr. Abdelfatth Amor, Mr. Nisuke Ando, Mr. Prafullachandra Natwarlal Bhagwati, Mr. Alfredo Castellero Hoyos, Ms. Christine Chanet, Mr. Edwin Johnson, Mr. Walter Kalin, Mr. Ahmed Tawfik Khalil, Mr. Rajsoomer Lallah, Ms. Elisabeth Palm, Mr. Rafael Rivas Posada, Sir Nigel Rodley, Mr. Ivan Shearer, Mr Hipolito Solari-Yrigoyen, Ms. Ruth Wedgewood and Mr. Roman Wieruszewski

2) 병역법 제88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다.

“입영의 기피 (1)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5일 [....]”

기소되었고, 2002년 2월 보석이 허가되었다.

2.2 2004. 2.1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진정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2004. 4.28.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제1부는 아래와 같은 논리로 원심의 유죄판결 및 형 선고를 지지했다. “...개인적 신념에서 비롯된 양심에 따른 행동을 해야 하는 내심의 의무가 국가의 정치적 독립 및 영토, 국민의 생명, 신체, 자유와 재산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국방의 의무보다 더 가치 있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의무이행 가능성 여부는 특정한 행위자가 아닌 사회의 평균인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종교의 교리를 이유로 법에 규정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소위 ‘양심적 결단’은 실정법을 위반하여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행위를 정당화 할 수 없다.”

2.3 2004. 7.22., 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논리로 유죄판결 및 형 선고를 다수결로 확정했다. “국가 안보, 법과 질서의 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윤여범의] 양심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허용되는 제한이다. ... [규약] 제18조는 대한민국 헌법 제19조 (표현의 자유) 및 제20조 (종교의 자유)와 동일한 규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병역법의 해당 조항에 대한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규약] 제18조에서 발생하지 않는다.”

2.4 대체복무제 마련을 요청하는 UN 인권위원회의 결의 및 다른 나라의 폭넓은 관례를 근거로 하는 반대의견은, 진지하게 이루어진 양심적 병역거부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취지 내에서, 병역면제를 허용하는 “정당한 사유”를 구성한다고 판단한다.

최명진 건

2.5 진정인 최명진도 마찬가지로 여호와와의 증인이다. 당사국 병무청은 2001.11.15. 진정인에게 군대 입영 통지를 했다. 진정인은 종교적 신념 및 양심을 이유로 정해진 입영기간 내에 입영을 거부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sup>3)</sup>에 의거하여 체포, 기소되었다.

2.6 2002. 2.13.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명진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고, 2002. 2.28. 윤여범에게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제1부와 대법원은 최명진에 대하여 2004. 4.28. 과 2004. 7.15. 각각 윤여범 건과 동일한 근거로 유죄판결 및 형 선고를 확정했다.

후속 상황

2.7 2004. 8.26. 헌법재판소는 윤여범, 최명진 건이 아닌 사안에 대하여, 대한민국 헌법에 따른 양심의 자유의 보호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병역법 제88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다수결로 기각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이 논증했다:

“헌법 제19조에 규정된 양심의 자유는 개인이 병역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 가능하다면 당사국에 개인의 양심의 고려 및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일 뿐, 개인의 양심적인 사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거나 법적 의무 수행에 대한 대체복무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 따라서 대체복무를 요구하는 권리는 양심의 자유로부터 도출할 수 없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가 병역의무에 대해 절대적인 우월적 위치에 있다는 규범적 표현을 하지 않는다. 헌법에서 그러한 권리를 명확하게 규정한 경우에만 군복무 수행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유효한 권리로 인정될 수 있다.”

3) 병역법 제88조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규정한다.

“입영의 기피 (1)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모집에 의한 입영통지서를 포함한다)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 또는 소집기일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하여도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불응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 현역입영은 5일 [...]”

2.8 논쟁 대상 조항의 합헌성을 인정함과 동시에 다수의견은, 입법부에 양심의 자유와 국가안보라는 공공의 이익 사이의 갈등을 완화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반대의견은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의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제22항, 당사국이 규약 제18조를 유보하지 않았다는 사실, UN 인권위원회의 결의와 다른 나라의 관례 등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를 적절히 수용할 수 있는 입법적 노력이 부재하는 상황에서 병역법의 관련 조항을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2.9 진정한 측은, 그 결정에 이어 보류되어 있던 300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재판이 신속히 처리되었다고 기술했다. 따라서 2004년 말까지 1100명 이상의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수감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진정사항

3. 진정한 당사국의 병역 대체복무제의 부재로 형사기소 및 징역의 고통을 겪는 것은 규약 제18조 제1항의 권리를 침해하고 주장한다.

당사국의 심리적격 및 본안에 대한 의견제출

4.1 당사국은 2005. 4. 2. 제출한 두 진정 건 모두 이유없다는 내용을 제출하였다. 당사국은 규약 제18조에서 양심의 자유를 표명하는 것에 대해 필요시 특정한 제한사유를 두는 것을 주목한다. 당사국의 헌법 제19조는 양심의 자유를 보호하나,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모든 기본권은 국민으로서의 의무 이행을 가능하게 하고 국가의 ‘법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현되어야 한다는 제한의 원리에 근거하여 “헌법 제19조에 명시된 양심의 자유

는 병역의무 수행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그러므로 공공의 안전 및 국민의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질서에 해를 주거나 국가의 ‘법질서’에 위협을 가할 경우, 양심의 자유 표명은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다.

4.2 당사국은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양심적 병역거부는 국가안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제한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내적 양심을 형성 또는 결정하는 자유와는 다르게, 종교적인 사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자유는 개인의 양심을 수동적 부작위를 통해 표명 혹은 실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규약 제18조에 규정된 바와 같이 공공의 이유로 제한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3 당사국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로서 적대적인 북한을 직면해야 하는 특수한 안보상황에서 모든 국민의 병역의무를 인정하는 국민개병제를 채택하였다. 따라서 병역의무 및 책임의 형평원칙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병역의무 이행의 형평원칙에 대한 강한 사회적 요구 및 기대를 고려할 때, 병역의무 특례를 허용하는 것은, 특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병역의무를 기피하려는 뚜렷한 사회적 현상을 감안하면, 국가 병역제도인 국민개병제의 근간을 파괴하여 국가안보를 훼손하고 사회 통합을 방해할 수 있다.

4.4 당사국은, 국가 병역제도는 국가 안보 문제와 직결되어 있으며, 지정학적 위치, 국내의 안보 상황, 당사국의 경제적 및 사회적 상황, 국가정서 등의 여러 요인을 참작하여 국방에 필요한 최대의 군사력 확보를 위한 입법부의 입법재량의 문제라고 주장한다.

4.5 당사국은 국가 안보 상태, 병역에 대한 형평성 요구 및 대체복무 채택에 수반되는 다양한 제한 요소를 고려하면, 병역의무 제한을 허

용할 만큼의 안보상황이나 국민 여론의 일치에 이르렀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4.6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금지하는 것은 특수한 안보 및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 정당화되며, 따라서 판결이 규약 제18조 제3항에서 제시된 양심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다. 당사국의 안보 상태, 병역의무에 대한 형평성 요구, 국가적 합의의 부재 및 수반되는 다른 여러 요소를 고려해보면, 대체복무가 도입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당사국의 서면에 대한 진정인들의 의견

5.1 2005. 8. 8.자로 진정인들은 당사국의 서면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진정인들은 논의의 중점이 '공공안전과 질서'라는 점을 인정하더라도 당사국이 규약 제18조 제3항의 허용되는 제한 사유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특정하지 않은 점을 주목한다. 여기서 또한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공안전과 질서에 왜 해가 되는지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엄밀히 말하자면, 양심적 병역거부는 허용된 적이 없으므로, 당사국은 그러한 위험성이 실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5.2 진정인들은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이 국민개병제를 위협한다는 점에 대한 당사국의 모호한 우려를 주목한다. 그러나 그 우려가 병역법에 의거하여 부과되는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석방 후의 차별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진정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의 양심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외적으로 표현하지 않아야 한다면 양심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진정인들은 로마제국에서 유래하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긴 역사와 폭력에 대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평화적 반대에 대하여 주목한다. 진정인들은 위원회의 일반논평(General Comment) 제22항을 참조

하여 양심적 병역거부가 공공안전, 질서 및 타인의 권리에 조금도 위협을 가하지 않으며, 심오하고 도덕적인 숙고를 기초로 오히려 이를 강화한다고 주장한다.

5.3 북한이 취하는 위협에 대하여 진정인들은 당사국이 북측에 비해 인구는 두 배, 경제 규모는 30배, 그리고 지난 10년간 지출한 연간 국방비는 10배 가까이 높다는 점을 주목했다. 북한은 지속적인 위성 감시를 받고 있으며 인도적 위기에 처해있다. 반면에, 당사국은 70만 명의 군인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마다 35만 명의 청년이 병역의무를 수행하고 있다. 2005. 7.11. 당시 수감 중인 1,053명의 병역거부자는 군사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없는 매우 작은 수치이다. 이와 같은 배경사실에 반하여 북한의 위협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처벌에 대한 정당성으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5.4 형평성 문제에 관하여, 진정인들은 필요하다면 복무의 기간을 연장하는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하여 이를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진정인들은 당사국과 적어도 동등한 외부 위협을 직면하고 있는 대만과, 독일에서의 대체복무제도 수립으로부터 얻어진 긍정적인 경험에 주목했다. 이러한 제도는 사회통합 및 발전과 사회내의 인권존중에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병역을 기피하는 사회적 현상은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와 관련이 없으며, 군인들이 직면하는 열악한 군대환경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이 개선된다면 병역기피 현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5.5 진정인들은 대체복무제 도입을 입법부의 재량에 맡기는 것에 대하여, 그러한 재량이 규약 위반을 용인하지 않고, 이 재량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극히 적다는 점을 주목하며 반대한다. 또한, 당사국이 UN 인권위원회의 위

원국으로서 의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고의성 여부와 관계없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상황을 시민적·정치적 권리위원회에 대한 정기적 정부보고서에 보고하지 않은 점을 주목했다.

#### 당사국의 보충의견

6.1 2006. 9. 6.자로, 당사국은 진정의 본안에 관하여 진정인들의 의견서에 대한 보충 의견서를 제출했다. 당사국은, 헌법 제5조에 의해 국군은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고, 헌법 제39조가 병역의 의무는 국가 안보 확보에 중요한 핵심 수단이며, 그 자체가 법이 부여하는 특권 및 법의 보호라고 한 점을 주목한다. 당사국은 국가의 안전보장이 국가 존립의 불가결한 전제 조건으로 영토를 보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수호하며, 모든 국민이 자유를 행사하는데 기본적인 요건임을 주목한다.

6.2 당사국은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유는 규약 제18조 제3항에 제시된 사유에 해당되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주목한다. 생명과 공공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기본권 일부를 희생하고서 모든 국민에게 부여되는 병역의 의무에 대한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국토방위의 주력으로 작용하는 국가병역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으며, 사회 갈등을 급증시키고 공공의 안전 및 국가 안보에 위협을 초래하여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침해한다. 따라서 공동체에서는 공공 안전과 질서에 해가 되거나 국가의 법질서에 위협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제한될 수 있다.

6.3 당사국은 신개념의 국가 방위와 현대전의 등장으로 한반도의 상황이 변화하였다는 점과 남북한의 경제력의 불균형으로 인한 군사력 격차의 존재가 사실이라고 해도, 인적 병력이 국가 방위의 주된 형태라고 주장한다. 낮은 출산

율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력 부족의 예상도 참작해야 한다. 비록 소수이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것은 군복무를 기피하는 현상을 저지시킬 수 있다. 대체복무제도를 채택할 경우 현행제도가 쉽게 붕괴할 수도 있다. 과거의 병역기피를 위한 부정행위 및 사회적 분위기의 경험에 비추어, 대체복무가 병역기피 시도를 예방한다고 추측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인적 병력이 국토방위의 주력인 가운데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병역 기피의 합법적인 장치로 악용, 징병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려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

6.4 진정인들의 평등에 대한 주장에 관하여, 당사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면제를 허용하거나 더 가벼운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헌법 제11조에 명시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고, 헌법 제39조에서 부과하는 국방의 보편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며, 특정한 집단에게 허용할 수 없는 특별대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군복무의 평등에 대한 강력한 사회적 요구 및 기대를 참작하여, 병역면제를 허용하는 것은 불평등을 야기함으로써 사회 통합을 저지하고 국가전체 역량에 손상을 줄 수 있다. 대체복무 제도를 채택할 경우, 평등의 관점에서 모든 의무자에게 군복무와 대체복무 중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하므로, 공공 안전 및 질서 그리고, 기본권과 자유의 보호에 위협을 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당사국은 인권문제가 병역기피의 주요원인임을 인정하고 군대내 상황을 실질적으로 개선해왔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국가보다 현저히 긴 2년의 군복무 기간이 병역기피의 이유라는 점은 군대내 상황개선 및 대체복무 채택과 관계없이 지속되고 있으며 감소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6.5 진정자들의 국제적 관례에 대한 주장에 관하

여, 당사국은 독일, 스위스 및 대만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를 부여하는 점을 주목한다. 당사국은 각국의 제도 관리자와 접촉하고 연구와 세미나를 통하여 각국의 이행 자료를 수집하고, 진전상황에 대한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당사국의 채택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세 국가는 대체복무를 각국의 특정 상황에 맞추어 채택한 점을 주목한다. 예를 들어, 유럽에서는 안보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협이 급격히 감소한 점을 감안, 냉전 이후 의무적인 군복무에서 자원병으로 전환하여 대체복무를 도입하였다. 대만은 과다 징병이 1997년 시행된 병력 감축 정책의 이행에 문제가 되자 2000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했다. 당사국은 2006. 1. 국가인권위원회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NAP) 권고안을 작성하여, 정부가 이 문제와 관련하여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주목한다.

논점과 위원회의 심리

심리적격 판단

- 7.1 진정에 포함된 어떤 주장을 검토하기 전에, 인권이사회는 절차규칙 제93조에 따라 진정이 규약의 선택의정서에 의거, 심리적격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 7.2 당사국의 진정에 대한 심리적격 이의신청이 없거나 위원회가 전체 또는 부분에서 진정이 심리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선언해야 하는 사유

가 없다면, 위원회는 규약 제18조에 대한 주장이 심리적격이 있다고 선언한다.

본안판단

- 8.1 위원회는 선택의정서 제5조 제1항에 의거, 양 당사자가 제출한 모든 자료에 입각하여 본 건 진정을 검토하였다.
- 8.2 위원회는, 양심의 자유 및 개인의 종교 또는 신념을 표명하는 권리를 보장하는 규약 제18조는, 진지하게 이루어진 그들의 종교적 신념, 즉 강제적 병역의무를 따르는 것은 윤리적, 도덕적으로 그들 개인에게 허용될 수 없다는 신념을 인정하는 것이라는 진정인들의 주장을 주목한다. 위원회는 또한 규약 제8조 제3항은 “강제적 또는 의무적인 근로”의 의미에서 “모든 형태의 군복무, 양심적 병역거부가 인정되는 국가에서는 법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요구되는 모든 국가적 의무”를 배제한다는 점을 주목한다. 규약 제8조는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인정하지도 배제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진정인들의 주장은 규약 제18조만에 의해 평가되며, 그 조항에 대한 해석은 다른 규약상 권리보장과 마찬가지로 문맥과 취지를 고려하여 시간에 따라 서서히 변화한다.
- 8.3 위원회는 제18조 제1항<sup>4)</sup>에 의거, 양심적 병역거부를 보호받아야 하는 종교적 신념 표명의 한 형태라고 하는 주장에 대한 평가를 담은 이전 결정례를 상기한다. 위원회는, 개인

4) Muhonen 대 Finland 건(사건 번호 89/1981) 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제18조가 양심적 병역거부의 권리를 보장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결을 거부했다. L.T.K. 대 Finland 건 (사건번호 185/1984)과 관련하여 위원회는 본안에 관한 문제를 완전히 다루지 않으려 하였고, 심리적격의 문제에 관한 사항으로 결정하여 쟁점이 제18조의 범위에서 벗어났다. Brinkhof 대 The Netherlands 건(사건번호 402/1990)은 전체 병역거부자와 여호와의 증인의 구별을 다루었고, Western 대 The Netherlands 건(사건번호 682/1986)은 권리 자체보다 국내법에 따른 양심적 병역 거부의 인정의 절차를 다루었다. 위원회는 J.P. 대 Canada 건(사건번호 446/1991)에서는 최종결정을 위해 필요하지는 않았으나, 더 이상의 추가설명 없이, 제18조가 “군복무 활동 및 군비에 대한 양심적거부를 포함한 의견 및 신념을 보유, 표현 및 배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보장한다.” 는 점을 주목했다.

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권리는 법률상 모든 의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나, 제18조 제3항에 부합하는 한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종교적 신념에 반하여 행동하도록 강요당하지 않도록 하는 보호를 제공한다고 본다. 위원회는 양심이나 종교적 신념의 요구와 심각한 충돌을 유발하는데도 살상에 이를 수 있는 힘을 사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규약 제18조의 문제에 속한다고 보는 일반논평 (General Comment) 제22항<sup>5)</sup>의 보편적 견해를 상기한다. 위원회는, 본건에서 진정인들이 징집을 거부하는 것은 진지하게 이루어지는 그들의 종교적인 신념을 직접 표명하는 것이라는 점을 주목한다. 진정인들에 대한 유죄판결 및 형 선고는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것에 대한 제한에 해당한다. 그러한 제한은 어떤 제한도, 공공 안전, 질서, 보건, 도덕 혹은 타인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약 제18조 제3항에 의해 정당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러한 제한은 문제가 되는 본질적인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8.4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내법에 의하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는 절차가 없는 점을 주목한다. 당사국은 이러한 제한이 국방력과 사회 통합을 유지하기 위한, 공공안전 유지에 필요한 제한이라고 주장한다. 위원회는 당사국의 국가안보에 관한 특수한 상황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국가인권정책기본 권고안 중 양심적 병역거부 부분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한 주장을 주목한다(상기 6.5항). 위원회는 관련 국가들의 시행례와 관련하여 규약 비준국들 중 의무복무제를 취하고 있는 나라의 대체복무제 도입이 증가하는 점과, 당사국이 진정인에게 제18조의 권리를 완전히 보장하는 경우 어떤 구체적인 문제

점이 발생하는지 입증하지 못한 점도 주목한다. 사회통합 및 형평성 문제와 관련하여, 위원회는 당사국이 양심적 신념 및 그 표명을 존중하는 것이 사회통합 및 안정적 다원주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요소라고 본다. 위원회는 국민개병제 원칙의 근간을 무너뜨리지 않고 의무복무를 하는 자와 대체복무를 하는 자 사이의 불공정한 불균형을 제거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를 마련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가능하며 실제적으로 보편적이라고 본다. 위원회는 당사국이 본건에서 규약 제18조 제3항 의미 내에서, 문제되는 제한이 꼭 필요한지 여부를 입증하지 않은 점을 주목한다.

9. 위원회는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선택의정서 제5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파악한 본건의 사실관계가 각 진정인에 대하여 당사국의 규약 제18조 제1항 위반이라는 견해를 밝힌다.

10. 규약 제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당사국은 진정인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포함한 효과적인 구제를 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은 유사한 위반이 장래에 또 발생하지 않도록 보장할 의무가 있다.

11. 선택의정서의 당사국이 됨으로써 당사국은 위원회에 대하여 규약 위반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결정할 권한을 인정하였고, 규약 제2조에 따라 당사국은 영토 내에 있거나 재판권이 미치는 모든 개인에게 규약에 인정된 권리를 보장할 의무와 규약 위반시 효과적이고 집행 가능한 구제수단을 제공할 의무가 있음을 상기하면서, 위원회는 90일 이내에 본 견해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에 대한 정보를 받고자 한다. 또한 당사국이 위원회의 견해를 공표할 것을 요청한다.

5) 일반논평 제22번 (1993년), 제11항